

2-2-7 계절학기 수업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9조에 의한 계절학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계절학기 수업”이라 함은 학칙상의 정규학기(이하 “정규학기”라 한다)와는 별도로 학칙에 규정된 학사과정을 이수학점 중 일부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

제3조(교과목 개설) ① 개설교과목은 정규학기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학사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수강 대상자의 폭이 넓고 설강운영이 가능한 교과목으로 한다.

② 각 교과목별 최소 개설인원은 5명으로 한다. 단, 강좌의 특수성 및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4.4.>

제4조(수강자격 및 수강신청) ①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등록된 자는 수강자격을 갖는다. <개정 2012.4.2.>

② 수강 희망학생은 지정된 기일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개강 후 3주 이내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.

③ 폐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취소한다. 다만, 폐강된 교과목은 개강 전일까지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수업기간) 수업기간은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. 단, 실습 등 기간을 단축하여 집중 이수하는 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12.27.>

제6조(학점) ① 계절학기 수업에서의 학점은 15시간 이상의 강의(시험시간 포함)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·실기·체육 과목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
② 매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까지로 한다.

제7조(수업시간) 수업시간은 1학점 당 1주 4시간 기준으로 편성한다.

제8조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과목별로 강의시간 중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추가시험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② 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 계절학기 수업 성적은 학칙 제 44조에 의거 평가한다. <개정 2012.4.2.>

④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, 실점, 평점평균에 포함한다. <개정 2009.3.1.>

제9조(납입금) ① 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입금은 결석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② 납입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수강과목이 폐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

호의 따라 납입금을 반환한다.

1. 당해학기 개시일 전 : 납입금 전액
2.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: 납입금의 3분의 2
3.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: 납입금의 2분의 1
4.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
제10조(강의료 지급) 강의료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3.4.4.>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